

## 직권 조치 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2년 10월 18일

청구동장  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장 *수	김 *형 1976-07-27	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 (신당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2-10-18